

예 산 총 칙

2014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14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436,911,267	13,107,338
일반회계	369,417,093	11,082,513
특별회계	67,494,174	2,024,825
공기업특별회계	24,912,845	747,385
상·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	24,912,845	747,385
기타특별회계	42,581,329	1,277,440
의료급여기금운영	1,628,202	48,846
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	1,324,281	39,728
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	286,400	8,592
진내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	4,243,414	127,302
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	18,882,751	566,483
농공지구조성사업	269,883	8,096
원전지역자원시설세재정보전금사업	15,946,398	478,392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채무 부담행위사업은 별첨 "계속비 행위조서"와 같다.

제 4 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"계속비 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5 조 명시 이월사업은 별첨 "명시 이월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,673,050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1,0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복구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제 9 조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로 간주처리한다.